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통·반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통 순서 조정(안 별표 14)

- 통 · 리 : 693개 통 · 리(통 491, 리 202) ⇒ 숫자 변동 없음
 - 선주원남동 : 2020년 7월 행정구역 개편 시, 35통~39통이 송정동으로 편입되면서 공백 통이 발생함에 따라 40통~53통까지를 35통~48통으로 앞당겨 조정

○ 3개 반 폐지(안 별표 17)

- 반 : 5,025개 반 ⇒ 5,022개 반(3개반 감소)
 - 신평1동(감3) : 원평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광신 프로그램스 신축에 따라 6통 12개 반을 6통 9개 반으로 조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·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,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·반을 조정함으로써,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